

마이크로니들링

- 마이크로니들링은 바늘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전동 펜형 기기, 롤러에 미세한 바늘이 달린 롤러형 기기, 또는 평평한 표면에 미세한 바늘이 달려 있어 피부에 찍는 방식의 더마 스탬프를 사용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.
- 모든 마이크로니들링 기기와 제품은 제조사의 사용 설명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.
- 마이크로니들링 기기가 캐나다 보건부(Health Canada)로부터 리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. 리콜 관련 정보는 캐나다 보건부(Health Canada) 웹사이트(recalls-rappels.canada.ca/en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롤러형 기기

- 롤러 헤드가 분리되지 않는 마이크로니들 롤러는 멸균된 일회용 제품이어야 하며, 사용 후에는 제품 전체를 승인된 손상성 의료폐기물 용기(sharps container)에 버려야 합니다.
- 롤러 헤드가 분리되는 마이크로니들 롤러는 멸균된 일회용 제품이어야 하며, 사용 후에는 롤러 헤드를 승인된 손상성 의료폐기물 용기에 버려야 합니다.
    -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손잡이가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, 고객을 응대할 때마다 손잡이를 세척한 후 고효능 소독제로 소독해야 합니다.

마이크로니들링과 함께 사용하는 제품

- 피부 도포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품은 마이크로니들링 시술 직전, 시술 중 또는 시술 직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해당 제품을 마이크로니들링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, 캐나다 보건부(Health Canada)에 문의하십시오.
- 현재 캐나다에서는 인간 엑소좀(exosome)을 함유한 제품의 판매나 사용이 승인된 사례가 없습니다.
- 인간 엑소좀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관련 시술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. 엑소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BodySafe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캐나다 보건부(Health Canada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시술 전에는 캐나다 보건부(Health Canada)에서 승인한 피부 마취제만 사용해야 합니다. 주사형 마취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 피부 마취제를 사용할 경우, 마취제를 도포하기 전에 시술 부위를 적합하고 승인된 피부 소독제로 세척해야 합니다.



마이크로니들링 시술 전

- 포장 상태를 확인하여 바늘이 양호한지, 멸균 바늘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. 유효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, 포장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.
- 고객에게 시술 과정 및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를 알리십시오.
- 시술 부위에 발적, 부기 또는 발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. 붉거나, 부었거나, 감염되었거나, 발진이 있는 피부 부위에서 6인치 이내의 부위에는 시술을 피하십시오.
- 새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기 전과 장갑을 벗은 후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하십시오.
- 크림, 로션, 연고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덜어내십시오.
- 마이크로니들링 시술을 하기 전에 70% 이소프로필 알코올과 같은 승인된 소독제를 사용하여 시술 부위의 피부를 소독하십시오. 피부에 눈에 띄는 오염이 있는 경우, 소독제를 바르기 전에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어내십시오.
- 멸균 바늘은 사용 전까지 멸균 포장 상태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.

시술 후 관리지침

- 마이크로니들링 시술 후, 모든 고객에게는 피부가 붉어지거나, 붓거나, 감염되거나, 불편함을 느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두로 안내하고 서면 안내자료도 제공해야 합니다.

규제 대상 행위 및 마이크로니들링

- 일부 마이크로니들링 기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며, 규제 대상 의료 전문가(RHP) 또는 RHP로부터 적절한 위임을 받은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시술자는 마이크로니들링 기기에 대한 제조사의 모든 사용 지침서를 검토하고, 규제 대상 시술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만 수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.
- 온타리오주에서 “규제 대상 행위”는1991년 규제 의료 전문가법(Regulated Health Professional Act, 1991, S.O. 1991, c.18)에 명시된 바와 같이, 의사, 전문간호사 등 규제된 의료 전문가 또는 해당 시술을 수행하도록 이들이 법적으로 위임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.
- ‘규제 대상 행위’는1991년 규제 의료 전문가법(Regulated Health Professional Act, 1991, S.O. 1991, c.18) 및 온타리오 주 규정 107/96 ‘규제 대상 행위’에 정의되어 있으며,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.



  - 진피 아래의 조직, 점막 표면 아래의 조직, 각막 표면 내 또는 그 아래의 조직, 또는 치아 표면 내 또는 그 아래의 조직에서 수행하는 시술(치아 스케일링 포함)
  - 해당 법에 따른 규정에 규정된 에너지 형태(전기응고 등)를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지시하는 행위
- 온타리오 주 규정 107/96호 '규제 대상 행위'에 따라, 다음의 활동은 '규제 대상 행위'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.
  1. 장신구 착용을 위한 귀 또는 신체 부위에 뚫는 피어싱
  2. 전기분해 제모
  3. 미용을 위한 문신 시술